

대법원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정당인 원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수61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임¹⁾
- 원고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 대법원 단심²⁾

- 1) 피고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원고와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여 원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음
- 2)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가 2020. 3.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다. 판단 근거

-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배척**
 - 피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도 16922 판결)
 -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피고인의 허위 재산내역이 기재된 재산신고서와 후보자명부를 게시하게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당선무효사유가 다르고, 당선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에서 별개로 판단할 사항이며, 피고의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본안에 관한 판단 ▶ 청구 기각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공직자윤리법 제1조, 제10조의2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소정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 행사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후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등 참조)

● 송파동 건물 중 6/10 지분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 부정

- 피고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신고사항 중 송파동 건물 부분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란에 복합건물인 송파동 건물 중 피고 지분 6/10에 해당하는 '214.37㎡' 및 위 건물의 대지 면적 163.7㎡ 중 피고 지분 4/10에 해당하는 '65.48㎡' 를 함께 기재하면서 다만 재산신고서의 '비고' 란에 '공유(지분 4/10)' 라고만 기재하고 건물 지분 6/10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원고가 재산신고서의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인 ‘1,260,460,000원’ 에 근접함

-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6/10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당시 피고의 인식과 의사, 송파동 건물과 대지의 각 지분 면적과 가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 부정

- 피고가 동생 명의로 소유하였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하여 동생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국세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2018. 6. 18.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가 2020. 3.경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 란에 위 은행 예금을 포함하여 합계 2,166,192,000원을 기재함
-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 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